##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27

발의연월일: 2022. 11. 18.

발 의 자:김희곤・구자근・김영식

박대수 • 백종헌 • 서범수

양정숙 · 윤한홍 · 이명수

정희용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원활한 금 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미국의 재무부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및 연방예금 보험공사 'DGP(Debt Guarantee Program)', 일본의 '위기대응계정', EU의 '예방적 공적지원' 등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제도를 구축한 바 있음.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 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주요내용

-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 1)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2)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함.
- 나.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9조의4 신설)

부보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심사, 금융 감독원장 협의 및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7 신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여야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함.

법률 제 호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예금보험제도"로 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제38조의4제3항"을 "제38조의4제3항 및 제39조의 4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를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으로 한다.

6의3. 제6장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21조제1항 중 "등의 업무"를 "등, 제39조의4 및 제39조의7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를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보금융회사가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를 "제4항에 따라"로한다.

제2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의4에 따른 자금지원

제24조제2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그 부대비용"을 "그 부대비용, 제39조의4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10.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11.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및 제24조의4에 따른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 우
  -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 3.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4.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 5.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 6. 금융안정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 ③ 공사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
- 2. 예금보험기금채권(제2항제1호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상환
- 3. 차입금(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차입금을 말한다)과 그 이자의 상환
- 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 ⑥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이 전할 수 있다.

- ⑦ 금융안정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제30조의4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⑧ 금융안정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신용질서의 안정"을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제1호 중 "제38조"를 "제38조 또는 제39조의4"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벌칙"을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한다. 제39조의4를 제39조의9로 하고,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8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4(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 가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금지원 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기 전에 자금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

은행 총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신청회사"라 하며, 신청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자금지원의 원인이 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신청회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것
- 2.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유로 신청회사에 자금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3. 제39조의7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의 내용이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공사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에 앞서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 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⑧ 공사는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회사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 지하여야 한다.
- ⑨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자금지원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신청회사의 업종 및 현재 재무상태
- 2. 신청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의한 자체적인 증자 가능성
- 3. 그 밖에 신청회사의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에의 기여 가능성
- ⑩ 그 밖에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의5(보증료 등의 부담) 공사는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 는 금융지주회사에게 보증료 등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9조의6(자금지원 원칙의 특례) 공사는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 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9조의7(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점검 등) ① 신청회사는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금 상환계획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 2. 공사의 자금지원 이외에 재무상황 개선방안
  - 3.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및 자금상환계획
  -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상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피지원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피지원회사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피지원회사에 대하여 검사할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제21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공사가 제39조의4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39조의9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금융회사가</u>	제1조(목적)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	예금보험제도
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	
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	
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
	승)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	4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u>제38조의4제</u>	제38조의4제3
<u>3항</u> 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	<u>항 및 제39조의4제5항</u>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의3. 제6장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7. 제1호부터 <u>제6호까지 및 제6</u> <u>호의2</u>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 무

8. • 9. (생략)

② (생략)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저 제출 요구 등) ① 공사는 부보 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 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 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 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 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 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④ 공사는 <u>예금자등을 보호하기</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 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 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7 <u>세6오까시, 세6오의</u>
2 및 제6호의3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에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u></u>
제39조의4 및 제39조의7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
원 업무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
용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 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 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 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 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보험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받 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 독원장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 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 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 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자료의 사실 여 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하다.

<신 설>

1. ~ 5.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⑥ ~ ⑧ (현행과 같음)
]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u>.</u>
1. ~ 5. (현행과 같음)
6 제30조이/에 따르 자그지의

-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
   ② ----- 

   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 1. ~ 9. (생략)

<신 설>

<신 설>

10. (생략)

-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생략)
-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 5. (생 략) ④ (생 략)

<신 설>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지
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1.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u> </u>
1. (현행과 같음)
2
<i>2</i> .
그 부대비용, 제39조의4에 따
른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보
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

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에이바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계정 및 제24조의4에 따른 특별계정과 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 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 해 다수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

   우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

로 조성한 자금

-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 3.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4. 제39조의5에 따른 보증료 등 수입금
- 5.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 6. 금융안정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 ③ 공사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 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금융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자금 지원과 그 부대비용
- 2. 예금보험기금채권(제2항제1호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한 정한다)의 원리금 상환
- 3. 차입금(제2항제2호 및 제5호 에 따른 차입금을 말한다)과

그 이자의 상환

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 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 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 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금융안정계정의 자산 및 부 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 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의 각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⑦ 금융안정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 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 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제 30조의4는 제외한다)을 준용한 다.

⑧ 금융안정계정의 운영에 관하 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발행 등) ① -----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 ② ~ ⑥ (생 략)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① 저 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 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 양수사실 을 공고함으로써 「민법」 제45 0조에 따른 지명채권 양도의 대 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만,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 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 고 전에 그 채권양도인과의 사 이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1.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u> </u>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① -
,
 -
1
제38조 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는 제39조의4-----양도받는 자산

2. · 3. (생략)

② (생략)

제6장

<신 설>

- 2.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39조의4(자금지원의 요건과 절 차) ①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 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 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4조의5 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 로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공사에 자금지원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기 전에 자금지원 신청 방법 및 신 청 절차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 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 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이하이 장에서 "신청회사"라 하며, 신청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자금지원의 원인이 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한다.

- 1. 신청회사가 부실금융회사 또 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것
- 2.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중 하 나 이상의 사유로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것
- 3. 제39조의7에 따른 자금상환계획의 내용이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 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 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 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공사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① 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공사는 신청회사에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회사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자금지원 조건에 관하

<신 설>

<신 설>

역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신청회사의 업종 및 현재 재

   무상태
- 2. 신청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의한 자체적인 증자 가능성
- 3. 그 밖에 신청회사의 금융제 도 안정성 유지에의 기여 가 능성

① 그 밖에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보증료 등의 부담) 공 사는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 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 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 주회사에게 보증료 등을 부담하 도록 할 수 있다.

제39조의6(자금지원 원칙의 특례) 공사는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 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 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4 및 <신 설>

제38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39조의7(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점검 등) ① 신청회사 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자금상환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

-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 2. 공사의 자금지원 이외에 재 무상황 개선방안
- 3.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및 자금상환계획
-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상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 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 에서 "피지원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

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의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피지원회사에 자료의 제출 및관계자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피지원회사 에 대하여 검사할 것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 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금상 환계획 이행 상황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신 설>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공사가 제39조의4에 따라 부보
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
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
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
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
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는 「상법」 제34
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
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
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
행할 수 있다.

<u>제7장 벌칙</u>

<u>제39조의9</u> (현행 제39조의4와 같음)

<u><신</u> 설> 제39조의4 (생 략)